제345회 경상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. 2. 27.(화)

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건설소방위원회 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(김창기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창기·남진복·백순창·박순범·허복·이우청·박승직· 김홍구·차주식·박창욱·박영서·김진엽 의원(12명)

2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소방훈련·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O 직원의 교육참석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소방기자재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4. 관련법령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
-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O 법제심사: 검토완료
- O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O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O 해당부서 검토의견: 없음
- O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제출

6. 입법예고 결과

- O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4. 2.19.~ 2.23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-30호
- O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○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

정하고 그에 따른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.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안 제1조, 안 제2조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 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 정함.
- O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음.
 - 소방훈련과 교육 시 소화·화재통보·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방훈련과 교육의 실질적인 효 과를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또한, 공공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훈련의 전문성과 실효

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 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·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함.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에 사용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교육·훈련에 필수적 소방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훈련 및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 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 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의무 인식과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 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.

○ 다만, 본 조례 제정 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교육훈련 기자 재 등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및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·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구분	시ㆍ도	조례명	제ㆍ개정일자	비고
1	강원특별자 치도	-		
2	경기도	경기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18. 1. 4. 개정 2023. 4. 11.	조례
3	경상남도	-		
4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	제정 2020. 9. 28.	조례
5	대구광역시	-		
6	대전광역시	-		
7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·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18. 1. 10.	조례
8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14. 1. 9. 개정 2023. 5. 22.	조례
9	세종특별자 치시	-		
10	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	제정 2020. 12. 29.	조례
11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23. 11. 9.	조례
12	전라남도	-		
13	전북특별자 치도	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18. 3. 30. 개정 2023. 12. 8.	조례
14	제주특별자 치도	-		
15	충청남도	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20. 3. 10.	조례
16	충청북도	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제정 2020. 1. 1.	조례

관계법령 발췌

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39조(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공립학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·신체와 건축물·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화재예방,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,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 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1.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· 책임 및 선임 등
 - 2.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
 - 3. 자위소방대의 구성 · 운영 및 교육
 - 4.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
 - 5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

- 제5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)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: 같은 호 나목 각 호

-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가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나목,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)·3)·4)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, 이하 "강습교육"이라 한다)을 받은 사람
-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(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)에 분산되어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